

NEWSLETTER 793

Feb 27, 202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에 따른 개정 -

기획재정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인 구매확인서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하고, 간이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종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가. 구매확인서 발급권한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도 부여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5조(내국신용장등)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2. (생략)	제5조(내국신용장등) ----- ----- -. 1. -----장 또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III.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un6224@korea.kr)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Contact



서경은 관세사
T 02-6011-3033
E keseo@esein.co.kr



이수지 관세사
T 02-6011-3065
E szlee@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